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함에 따라, 변경된 번호판 크기에 맞게 이륜자동차 번호등의 휘도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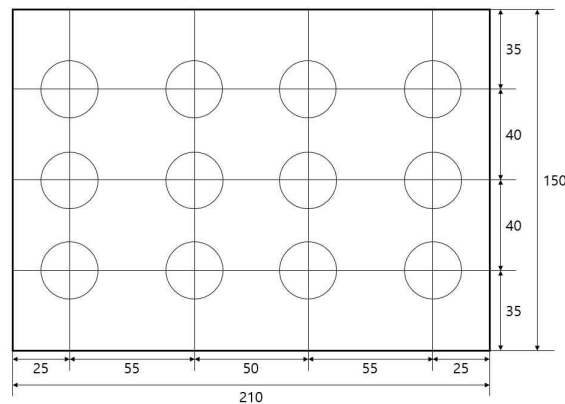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의36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



주)

1. 단위: 밀리미터
2. ○: 휘도 측정점(지름 25밀리미터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륜자동차 번호등 휘도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3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.